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 개정 :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조례의 목적 명확화(안 제1조)

다. 위원회의 구성 및 결정사항 정비(안 제2조 ~ 제3조)

라. 회의록 등 작성 신설(안 제5조)

마. 운영상 불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 삭제

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정책을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을 포함한 국·소장(4급)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관계 유관 기관의 직원 및 학계 종사자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당연직위원의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위촉위원은 필요 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⑥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행정사무 간소화, 시책일몰제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4.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의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3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5조(회의록 등 작성)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심의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 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구미시정조정위원회”를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번호		소관부서		제안일시	
심의안건					
제안요지					
결 정 을 요 하 는 사 항					
관계법규					
참고사항 첨 부					

위와 같이 심의안건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국·소장 (인)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의 안 번 호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 의 일 시		심 의 장 소		
참 석 인 원				
심 의 안 건				
심 의 요 지 (주요 내용)				
심 의 결 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				
〃				
〃				
〃				
〃				
〃				

[별지 제3호서식]

구미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대장

의안 번호	심의 일자	건명 (제목)	주요내용	심의 결과	소관 부서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은 그 기록물의 원활한 생산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농지법」

제44조(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구·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⑤ 위원의 임기·선임·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농지개혁법」 1996. 1. 1.폐지  **농지법**

제4조 ① 삭제 <1950. 3. 10.>

② 본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에 농지위원회(以下 委員會라 稱함)를 설치한다.

제22조 본법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이의를 가진 이해관계자는 소재지위원회의 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전항의 재사 결정에 대하여서는 순차로 상급 위원회에 최종으로 시도위원회 까지에 항고할 수 있다.

전2항의 이의 또는 신청기간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익일로부터 20일 이내 라야 한다.

□ 「농지 확대 개발 촉진 법」 1995. 6. 23. 폐지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지개발심의위원회) ① 농지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 및 농지개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수산부에 농지개발 심의위원회(이하 “開發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4급 공무원으로 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 추천 등에 있어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금융계, 기업계, 기관·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4.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회계과장으로 한다.
제4조의2(회의 등) ①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 할 안건은 회의 개최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⑥ 심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⑦ 심의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에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심의회는 위원과 심의회에 출석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미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 요인

-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세출 발생이 예상됨(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위촉위원 수당 등의 비용이 연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
 - 산출내역

내 용		산출내역	금액
위원회 참석수당	시정조정위원회	70천원×7명×48회	23,520천원

※ 위원회 수당 산출근거 : 70,000원(기본)

4.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기획계 윤정현(480-6503)

소 관 부 서		기획예산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박 영 일
	담 당	박 상 진
	담 당 자	윤 정 현 (480-6503)